

의안번호	2211499
의 퇴 인	신장식의원
회 답 일	2025. 8. 13.
추계번호	25B3806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6조의2(벌칙)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<삭제>1. 제14조제4항(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자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6조의2(벌칙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운송사업자등에 대한 벌칙 삭제(안 제66조의2)

- 현행법¹⁾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·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(이하 “운송사업자등”)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등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으며,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
- 개정안은 운송사업자등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조항을 삭제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운송사업자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함께 삭제하려는 것임
- 현행 형벌에 따른 벌금은 법무부의 수입이 되나, 법무부에 따르면 형벌 규정에 따른 벌금 수입을 형벌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률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현행 조항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현황을 알 수 없어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감소 등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1) 제14조(업무개시 명령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.

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.

제33조(준용 규정)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10조, 제10조의2, 제11조, 제11조의2, 제12조, 제12조의2, 제13조, 제14조,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, 제20조, 제21조 및 제25조(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운송약관”은 “운송가맹약관”으로, “운송사업자”는 “운송가맹사업자”로 본다.

제66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4조제4항(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자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